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42

발의연월일: 2025. 5. 30.

발 의 자:이해식・양부남・박정현

위성곤 · 장경태 · 정을호

채현일 • 이광희 • 이성윤

조정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반면, 국외에 나 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.

이에,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 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국외 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 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재외선거에서 국외부재자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이 재외거소투표 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(안 제49 조제1항).

- 나.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'재외거소투표관리'와 '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자료 및 정보의 제공'을 추가하고,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'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'을 추가함(안 제218조의3제1항제1호의2·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신설).
- 다.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 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,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하도록 함(안 제218조의4).
- 라.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함 (안 제218조의18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).
- 마.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)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(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를 "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로 한다.

1의2. 국회의원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44조의2제1항 중 "사전투표소"를 "사전투표소 및 재외투표소"로 한다.

제49조제1항 중 "대통령선거"를 "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"로, "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를 "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를 "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로 한다.

제64조제2항 전단 중 "대통령선거"를 "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"로, "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를 "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로 한다.

제218조의3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

5의2.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자료 및 정보의 제공

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

제218조의4의 제목 "(국외부재자 신고)"를 "(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, "국외부재자 신고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"로 하고, 같은 항후 단중 "국외부재자 신고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국외부재자 신고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국외부재자 신고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국외부재자신고서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"로, "국외부재자"를 각각 "국외부재자거소투표"로 한다.

-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선거권자(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・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.
- 1.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
- 2.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제218조의 19제4항에 따라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

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(이하 이 장에서 "국외부재자거소 투표 신고기간"이라 한다) 서면·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서에 적어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18조의5제5항 후단 중 "국외부재자 신고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"로, "국외부재자신고서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"로, "국외 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"을 "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"로 한다.

제218조의6의 제목 "(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)"을 "(공관부재자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 작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국외부재 자신고서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"로, "제218조의4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"를 "제218조의4제2항"으로, "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공관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공관부재 자신고인명부"를 "공관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"로 한다.

제218조의7의 제목 "(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)"를 "(공관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의 송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공관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"로, "국외부재자신 고서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공관 부재자신고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서"를 "공관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 명부와 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공관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"로, "국외 부재자신고서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"로 한다.

제218조의8제1항 전단 중 "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"을 "선거일 전 45일까지 5일간"으로 한다.

제218조의9의 제목 "(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)"을 "(국외부재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)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국외 부재자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"로, "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"을 "선거일 전 45일까지 5일간"으로,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"을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기간"으로. "국외부재자신고서"를 각각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"로.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국외 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국외부재자신 고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"로, "국외부재자신고서"를 "국외부재자 거소투표신고서"로,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 고인명부"로 하고. 같은 조 제2항 중 "국외부재자"를 "국외부재자거소 투표"로,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"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국외부재 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국외부재자신고인명 부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"로,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 성기간"을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기간"으로 한다.

제218조의10제1항 본문 중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국외부재자거소 투표신고인명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국외부재자"를 "국외부재 자거소투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국외부재자신고인"을 "국외부 재자거소투표신고인"으로 한다.

제218조의11제6항 중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"를 각각 "국외부재자거소 투표신고인명부"로, "국외부재자신고서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 서"로 한다.

제218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중 "국외부재자"를 각각 "국외부재자거소투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"를 "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"로 한다.

제218조의13제1항 중 "선거일 전 30일"을 "선거일 전 35일"로,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국외부재자신고서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"로 한다.

제218조의1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외투표"를 "재외투표(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다만, 재외거소투표자(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"○"표를 할 수 있다.

제218조의18제4항 후단 중 "제218조의16제1항"을 "제218조의16제1항

본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.
- ⑥ 재외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(재외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재외거소투표자의 거소, 성명,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)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우편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⑦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방법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안내문과 본인 확인서약서를 재외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
- ⑧ 재외거소투표자에 관하여는 제15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거소투표자"는 "재외거소투표자"로, "구·시·군선거관리 위원회"는 "재외선거관리위원회"로, "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"는 "책임위원등"으로 본다.

제218조의19제1항 본문 중 "재외선거인등"을 "재외선거인등과 제218조의4제1항에 따른 사람(이하 "국외부재자선거인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재외선거인등"을 "재외선거인등과 국외부재자선거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

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)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
-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에 투입·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·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218조의21제1항 본문 중 "투표함"을 "투표함(제218조의19제5항 본문에 따른 재외거소투표함을 포함한다. 이하 제218조의22제2항에서 같다)"로, "투표자수"를 "투표자수(제218조의19제5항 본문에 따른 재외거소투표자수를 포함한다. 이하 제218조의22제1항에서 같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"를 "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"를 "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"로 한다.

제218조의22제3항 중 "국외부재자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"로, "그 밖에"를 "재외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재외거소투표의 접수, 그 밖에"로, "국외부재자투표"를 "국외부재자거소투표"로 한다.

제218조의23제1항 중 "재외투표"를 "재외투표(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

다. 이하 같다)"로, "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"을 "국외부재자선거인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 및 재외거소투표자 투표함"으로 한다.

제218조의25제1항 전단 중 "제4항제7호·제10호"를 "제4항제10호"로 한다.

제242조제1항제2호 중 "거소투표자"를 각각 "거소투표자·재외거소투표자"로, "거소투표에"를 "거소투표·재외거소투표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선거기간) ① • ② (생	제33조(선거기간) ① • 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"선거기간"이란 다음 각 호	③
의 기간을 말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국회의원선거: 후보자등
	록마감일 후 10일부터 선거일
	<u>까지</u>
2.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	2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
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:	<u>장의 선거</u>
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	
선거일까지	
제44조의2(통합선거인명부의 작	제44조의2(통합선거인명부의 작
성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	성) ①
<u>사전투표소</u> 에서 사용하기 위하	사전투표소 및 재외투표소
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	
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	
의 선거인명부(이하 "통합선거	
인명부"라 한다)를 작성한다.	
	<u>.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후보자	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
의 등록은 <u>대통령선거</u> 에서는	대통령선거 및 국회
선거일 전 24일, 국회의원선거	의원선거

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(이하 "후보자등록신청개 시일"이라 한다)부터 2일간(이 하 "후보자등록기간"이라 한다)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 제64조(선거벽보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,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(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)까지,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·

지방자치단체의	의회의원
<u>및 장의 선거</u>	
② ~ ⓑ (현행과 같음	
제64조(선거벽보) ① (학	현행과 같
<u>유</u>)	
②	
대통령	서기 미
<u> </u>	
<u> </u>	
Z	방자치단
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	의 선거

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고, 해당 구·시·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 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(대통령 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)까지 첩부한다.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 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(투표 구를 단위로 한다)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,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·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 역을 지정한다.

③ ~ ① (생 략)

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 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처리한다.

1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2. ~ 5. (생 략)

<신 설>

<u>.</u>
③ ~ ⑫ (현행과 같음)
세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
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
2. ~ 5. (현행과 같음)
5의2.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

- 6. (생략)
-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2. ~ 5. (생 략)

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|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거소투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 려는 선거권자(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는 「주민등록법」 제 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• 관리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대통 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 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(이하 이 장에서 "국외부재자 신고기간"이라 한 다) 서면 • 전자우편 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 하여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

자료 및 정보의 제공

- 6. (현행과 같음)

-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
- 2. ~ 5. (현행과 같음)

및 발송

신고 등)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 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 는 선거권자(지역구국회의원선 거에서는 「주민등록법」 제6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 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· 관리되 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통합선 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 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.

- 1.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 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
- 2.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

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한다.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 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
- 2.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
-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야 한다. <후단 신설>

사람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투 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제218조의19제4항에 따라 거소 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 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 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 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(이 하 이 장에서 "국외부재자거소 투표 신고기간"이라 한다) 서 면 ·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서에 적어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 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

- 1. ~ 5. (생략)
-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·시·군의 장이 공고 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 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<u>국외부재자 신고</u>에 한하여할 수 있다.
-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· 시·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 용한 <u>국외부재자 신고</u>를 접수 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· 시·군의 장은 <u>국외부재자신고</u> 선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 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 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기간 만료일까

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
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
<u>한다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<u>제2항</u>
국외부재자거소투표
<u>신고</u>
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
<u> </u>
4
-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
⑤
국외부재자거소투
<u> 표신고서</u>
국외부재자거소투표

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

제218조의5(재외선거인 등록신청) 7 ① ~ ④ (생 략)

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 하여는 제21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외부재자 신고"는 "재외선거인 등록신청"으로. "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·시 •군의 장"은 "재외투표관리 관"으로, "국외부재자신고서"는 "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"로, "국외부재 자 신고기간 만료일"은 "재외 선거인 등록신청기한"으로, "여 권번호"는 "여권번호 및 「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"으로 본다.

국외부재자거
<u> </u>
제218조의5(재외선거인 등록신청)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
,
국외부재자거소투표
신고
<u>국외부재</u>
<u>자거소투표신고서</u>
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

제218조의6(공관부재자신고인명 부 등 작성) ① 재외투표관리 관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(변경등 록신청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를 접수하면 기재 사항의 적정 여부, 정당한 신고 •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 21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 으로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를. 제218조의5제1항 및 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를 각각 작성(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 다)하여야 한다.

- ② (생 략)
- ③ 재외투표관리관이 <u>공관부재</u> <u>자신고인명부</u>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한다.

제218조의7(공관부재자신고인명 저

218조의6(공관부재자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 작성) ① 	•
	∥218조의6 <u>(공관부재자거소투표</u>
표신고서	신고인명부 등 작성) ①
	국외부재자거소투
	표신고서
	제218조의4제2항
보 	
	<u> 부</u>
③	
③	
③	
③	
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	② (현행과 같음)
	③
	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
 218조의7 <u>(공관부재자거소투표</u>	
218조의7(공관부재자거소투표	<u>,</u>
]218조의7 <u>(공관부재</u> 자거소투표

부 등의 송부) ① 재외투표관 리관이 <u>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</u> 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를 작성하면 이를 즉시 구·시 ·군별로 분류하여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 청서와 함께 외교부장관을 경 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.

-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 항에 따라 <u>공관부재자신고인명</u> <u>부와 국외부재자신고서</u>를 접수 하면 이를 해당 구·시·군의 장에게 보낸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<u>공</u> 관부재자신고인명부, 재외선거 인 등록신청자명부,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 청서의 송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218조의8(재외선거인명부의 작 제

<u>신고인명부 등의 송부)</u> (1)
투표신고인명부
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
· ②
공관부재자거소투표
신고인명부와 국외부재자거소
<u>투표신고서</u>
③ <u></u>
관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
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218조의8(재외선거인명부의 작

성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 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 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 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.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 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 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 부를 작성한다.

② ~ ⑥ (생 략)

제218조의9(국외부재자신고인명 부의 작성) ① 구·시·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 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(이하 이 장에 서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

성) ①
<u>선거일 전 45일까지 5</u>
<u>일간</u>
i
<u>.</u>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∥218조의9 <u>(국외부재자거소투표</u>
신고인명부의 작성) ①
국외부재자거소투표
<u>선거일 전 45일까지 5일간</u>

성기간"이라 한다)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송부한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서와 해당 구·시·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서에 따라 <u>국외부재자신고</u> 인명부를 작성한다. 이 경우 같 은 사람이 2 이상의 <u>국외부재</u> <u>자신고를</u> 한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 된 <u>국외부재자신고서</u>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 한다.

- ② 거짓으로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 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<u>국외부재자신</u> 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.
- ③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거인명부"는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"로, "선거인명부작성기간"은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

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기간-
<u>국외부재자거소투</u>
표신고서
국외부재자거
소투표신고서
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
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-
<u>국외</u>
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
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
②국외부재자거소투
<u> </u>
국외
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
③ 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
<u>명부</u>
<u>국외부재</u>
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
국

간"으로 본다.

제218조의10(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·시·군의 장(이하 이장에서 "명부작성권자"라 한다)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 재자신고인명부(이하 "재외선거인명부등"이라 한다)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(이하 이 장에서 "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"이라한다)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한다. 다만,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열람에 한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 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자신 이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

<u> 외구재사기소투표신고인병구</u>
작성기간
제218조의10(재외선거인명부등의
열람) ①
국외부재
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
② (현행과 같음)
③
국외부재자거소투표

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 권자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 인 및 <u>국외부재자신고인(이하</u> "재외선거인등"이라 한다)이 재 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 안 행정안전부가 개설·운영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 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· ⑥ (생 략)

제218조의11(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) ① ~ ⑤ (생 략)

⑥ 명부작성권자가 재외선거인 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선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느 하나에 올려야

	4
	<u>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</u> 인
	<u>''</u>
	<u>.</u>
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제	218조의11(재외선거인명부등에
	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	6
	<u>국</u>
	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
	<u>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</u>
	<u> 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명부</u>

한다.

제218조의12(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 축)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 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 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 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이 경우 재외 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.

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기간

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

2.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 간

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

제218조의13(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)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,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

세218조의12(대통령의 궐위선거
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
축)
<u>국</u>
외부재자거소투표
1
- <u>국외부재자거소투표</u>
2
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
전 35일까지
세218조의13(재외선거인명부등의
확정과 송부) ①
<u>선거일 전 35일</u>
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
<u>인명부</u>

가진다.

-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 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 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·시 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구·시·군의 장 은 <u>국외부재자신고서(제218</u>조 의7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 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 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) 를 함께 보내야 한다.
- ③ ④ (생 략)

제218조의16(재외선거의 투표방 전법)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 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② <u>재외투표</u>는 선거일 오후 6 시(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 한다)까지 관할 구·시·군선 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

•
②
<u>국</u>
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서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218조의16(재외선거의 투표방
법) ①
<u>다만, 재외거</u>
<u>다만, 재외거</u> 소투표자(국외부재자거소투표
소투표자(국외부재자거소투표
소투표자(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
소투표자(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거소
소투표자(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거소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"○"표
소투표자(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거소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"○"표 를 할 수 있다.
소투표자(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거소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"○"표 를 할 수 있다. ② 재외투표(재외거소투표를
소투표자(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거소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"○"표 를 할 수 있다. ② 재외투표(재외거소투표를

다.

- ③ · ④ (생 략) 제218조의18(투표용지 작성 등) 저
 - ① ~ ③ (생 략)
 -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작성 ·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 · 교부한다. 이 경우 제218조의16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제218조의18(투표용지 작성 등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제218조의16제1항 본문-
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
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
표용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투
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
<u>성한다.</u>
⑥ 재외투표관리관은 제5항에
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
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(재외
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재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략)

외거소투표자의 거소, 성명, 재 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 호를 말한다)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 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 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우편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.

-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방법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안내문과 본인확인서약서를 재외거소투 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
- ⑧ 재외거소투표자에 관하여는 제15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거소투표자"는 "재외거소투표자"로, "구·시· 군선거관리위원회"는 "재외선 거관리위원회"로, "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"는 "책임위원등"으로 본다.
- ⑨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218조의19(재외선거의 투표 절 제 차) ①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 명서(여권 · 주민등록증 · 공무 원증 ·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 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 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 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외선거인은 제21 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 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 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 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 를 받아야 하며,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.

세218조의19(재외선거의 투표 절
차) ① 재외선거인등과 제218
조의4제1항에 따른 사람(이하
"국외부재자선거인"이라 한다)-

② (생략)

③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 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)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 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 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 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 표함에 넣어야 한다.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② (현행과 같음)
③
재외선거인등과 국외부재
<u> 자선거인</u>
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
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
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
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
당을 말한다)를 선택하여 투표
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

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

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

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

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

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

④ (생 략)

제218조의21(재외투표의 회송)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 관인의 참관 아래 <u>투표함</u>을 열고 <u>투표자수</u>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·봉인(封印)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 소는 공관과의 거리 등의 사유로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계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종료후 그 기간 중의 재외투표를 일괄하여인계할수 있다.

접수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 에 투입·보관하여야 한다. 다 만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 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 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·봉 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. 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218조의21(재외투표의 회송) ①

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고, 외교부장관은 외교행 낭의 봉함·봉인 상태를 확인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재외투표 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 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- 제218조의22(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·송부) ① · ② (생략)
 -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 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<u>국외부재자</u> 신고의 접수 및 처리, 재외투표소 설치 ·운영, <u>그 밖에</u> 재외선거 및

② <u>제1항에</u>
따른 재외투표 및 제218조의19
제5항에 따른 재외거소투표
·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218조의22(재외투표소투표록
등의 작성·송부) ① · ② (현
행과 같음)
3
<u>국외부재자거소투</u>
<u> </u>
<u>재외거소투</u>

<u>국외부재자투표</u>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18조의23(재외투표의 접수) 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<u>재외투표</u>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<u>국외</u>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<u>투표함</u>(이하 이 조와 제218조의24에서 "재외투표함"이라 한다)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(같은 조 제3항 및 <u>제4</u>항제7호·제10호는 제외한다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전투표 및 거소투표"는 "재외투표"로, "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"는 "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"로, "거

표용지의 발송 및 재외거소투
표의 접수, 그 밖에
<u>국외부재자거소투표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218조의23(재외투표의 접수) ①
재외투표(재
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. 이하
<u>같다)</u>
-국외부재자선거인 투표함과
재외선거인 투표함 및 재외거
소투표자 투표함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
<u>ম</u> া4
항제10호
<u>.</u>

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" 는 "재외선거인등이"로, "거소 투표 또는 선상투표"는 "재외 투표"로 본다.

② · ③ (생 략)

- 제242조(투표·개표의 간섭 및 저항해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<u>거소투표</u> <u>자</u>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 한 사람, <u>거소투표자</u>의 투표 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<u>거소투표에</u>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한 사람

② · ③ (생 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242조(투표・개표의 간섭 및
방해죄) ①
1. (현행과 같음)
2거소투표
자·재외거소투표자
<u>거</u>
소투표자·재외거소투표자
<u>거소투표·재외거소투표</u>
<u>에</u>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